

제2015호 고양시보

2023년 10월 13일(금)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2504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23-2508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양시 공고 제2023-2510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0
고양시 공고 제2023-2511호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
고양시 공고 제2023-2516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고양시 공고 제2023-2517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3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4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	140
고양시 고시 제2023-353호	도로명주소 고시	146

공 고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3-798호	공인 신조 공고	148
고양시 공고 제2023-2464호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	150
고양시 공고 제2023-250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152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범위 알림’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8조).
- 나. 도시공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녹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1, 2층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주교동, 동남빌딩)

- 전 화 : 녹지과 공원계획팀(031-8075-4388)

- 팩 스 : 031-8075-495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6.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생태순환적”이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생물의 다양성, 지속성, 자기순환적인 원리를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확충하고자”를 “확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3항제11호, 제11조제5항제10호, 제18조제1항제6호, 제19조제6호 아목, 제32조제5호 및 제42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호나목 중 “면적율”을 “면적률”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팜플렛”을 “소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을 “각 호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열람기간내”를 “열람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에 따라”로, “해지하고자”를 “해지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19조 내지 제24조”를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6조 중 “1월” 을 “1개월” 로 한다.

제27조 중 “6월” 을 “6개월” 로 한다.

제28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을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중 “소장” 을 “사업소장 및 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아니 하여야” 를 “않아야” 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할” 을 “총괄” 로 한다.

제50조 중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를 “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원녹지 등 조성계획 자문
 2.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심의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인을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기타사항” 을 “보칙” 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법과 이 조례” 를 “이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녹지과
입안자	과장 성명	녹지과장 김 종 천
	팀장 성명	공원계획팀장 김 희 정
	담당자 성명·전화	김 현 진 031-8075-438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생략) 1.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6.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 -----법-----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6.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생태순환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생물의 다양성, 지속성, 자기순환적인 원리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 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2. (생 략) 3.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시장이 체결한 녹화계약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 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생 략) 1.~10. (생 략) 11. 기타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⑥ (생 략)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마. (생 략) 3.~6. (생 략)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④ (생 략) ⑤ (생 략)	7. “생태순환적”이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생물의 다양성, 지속성, 자기순환적인 원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1. 법----- ----- ----- ----- 2. (현행과 같음) 3. ----- ---확충하기 위하여----- -----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 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 ④~⑥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면적률-- 다.~마. (현행과 같음) 3.~6. (현행과 같음)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u>팜플렛</u>의 제작·배포 2.~9. (생 략) 10.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u>의거</u>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u>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u>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u>당해</u>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생 략) 1.~5. (생 략) 6.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③ (생 략) 제19조(녹화계약내용) (생 략) 1.~5. (생 략) 6. (생 략) 가.~사. (생 략) 아. <u>기타</u>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생 략) 7.~9. (생 략)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생	1. ----- ----<u>소책자</u>----- 2.~9. (현행과 같음) 10. <u>그 밖에</u>-----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 -----<u>따라</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 -----<u>각 호의</u> <u>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u>----- -----. 1. <u>해당</u>-----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녹화계약내용)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사. (현행과 같음) 아. <u>그 밖에</u>----- ----- (1)~(2) (현행과 같음) 7.~9. (현행과 같음)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현행
---	---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고양시보 또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과 같음) ② ----- ----- ----- ---받아야---.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 -----따른----- -----해당----- ----- -----. ② -----따라----- -----열람기간 내----- -----. ③ -----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 -----따른----- ----- -----.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3조에 따라----- -----해지하려고----- -----. ② -----따른-----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과반수 이상----- -----받아-----. 제26조(계약의 갱신) ----- -----1개월----- ----- -----.
---	--

제27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 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2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생 략)

1.~4. (생 략)

5. 기타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8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7조(계약위반시의 조치) -----

-----6개월-----

-----.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따라-----
-----해당-----

-----.

제32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38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u>제40조(준용)</u>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사용제한) (생략) 1.~3. (생략) 4. <u>기타</u>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구성) ①~② (생략) ③ <u>당연직</u> 위원은 <u>공원녹지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한다.</u> ④ <u>위촉직</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5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경우 <삭제> 제42조(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제4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업소장 및 부서장</u>-----. ④ ----- ----- ----- ----- <u>않아야</u>-----. 1.~4.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u>총괄</u>-----.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간사) ----- -----<u>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 담당 공무원</u>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u>공원녹지 등 조성계획</u> 자문 2. <u>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심의</u>
---	---

제5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심의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인을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운영세칙) ----- -----<u>운영에</u>----- ----- -----.
제7장 기타사항 제52조의2(준용)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 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는 <u>법과 이 조례</u>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의2(준용) ----- ----- ----- -----<u>이 조례</u>-----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변경함(안 제33조제2항 및 제59조제1항).
-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 다.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함(안 제19조의2제3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 031-8075-49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기여”를 “이바지”로, “사항을”을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출석시켜”를 “출석하도록 하여”로,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전대”를 “전대(轉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대부시”를 “대부 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즉각”을 “즉시”로, “기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지 아니하고”를 “따르지 않고”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를 “취득(보상취득)해야”로, “사전에”를 “미리”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때에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토지위에” 를 “토지 위에” 로, “한한다” 를 “한정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 을 “해당” 으로 한다.

제1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1명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징수하여야” 를 “징수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을 “인정하는” 으로,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으로 인하여” 를 “등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연수가” 를 “사용 가능기간이”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아니하거나” 를 “않거나” 로, “태만히” 를 “게을리” 로,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 를 “대부료를 산출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를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로, “산출하여야” 를 “산출해야”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중 “산식 :” 을 각각 “산식:” 으로, “대부 받은” 을 각각 “대부받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히” 를 “매우” 로, “첨부하여야” 를 “첨부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계약일로부터” 를 “계약일부터” 로, “날로부터” 를 “날부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만원” 을 “50만원” 으로, “6회” 를 “12회” 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를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을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 필요에 의하여”를 “시가 필요하여”로, “일정기간동안 시가”를 “일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동”을 각각 “해당”으로,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 이내이거나”를 “경우거나”로, “면적범위 내에서”를 “면적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외의”를 각각 “외의”로, “500제곱미터이하의”를 “5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제47조 각 호 중 “관사 :”를 각각 “관사:”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사용자 “라 한다)”를 “(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52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를 “응접 세트”로, “카텐”을 “커튼”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고자 할”을 “납부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1.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15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25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2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를 “소유지분으로”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재산관리과장 김 학 배
	팀 장 성 명	재산관리팀장 양 정 길
	담 당 자 성명·전화	노 인 선 031-8075-2893

[별지 제1호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1)

회계명 :

(토지)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분	찾아보기
소재지 :		중분류					등기부등본(토지)	
		소분류					토지대장	
		세분류					지적도	

지 적	취득 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현재 :					연도	내용	금액
		m ²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 과세표시가							수익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연월일	지목	면적	거래시가	임대가격	시가표준액	조사자		취득연월일		연월일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연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연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2)

작성 자		확 인	
---------	--	--------	--

회계명 :

(건 물)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분	찾아보기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축물관리대장	
소재지 :		세분류					배치도	

연면적		취득시 :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m ²						연도	내용	금액
		현재 :								
		m ²								
건축연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 재료									
	지급 종류									
	종수		단면적							

임대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수익 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 연월일		연월일			
수량		취득 원인		상대방			
임대 연월일		취득 금액		변동사항			
임대 기간		전 소유자		관 리 청			
		등기 연월일		가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연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3)

회계명 :

(공작물)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분	찾아보기
소재지 :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연도	내용	금액

임대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수익 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 연월일		연월일			
수량		취득 원인		상대방			
임대 연월일		취득 금액		변동사항			
임대 기간		전 소유자		관리청			
		등기 연월일		가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연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4)

회계명 :

(기계·기구)

작성 자		확 인	
용 도		연 락	

관리자		대분류		형		용 도	
		중분류					
소재지		제조연월일		규격		연 락	
명칭		제조사		용량			
		제조 번호					

이동 연월일	이동사유	증액		감액		현재액		비고	기록 연월일 대조 연월일	인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금액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5)

회계명 :

[입목(立木)·죽(竹)]

작성 자		확 인	
구분	찾아보기		
부속 서류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주 재 산		부 속 서 류		
		중분류						
소재지 :		소분류						
		세분류						

주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 투자 상황
본수	(본) 주				
식 제 상 황	연월일				
	본수				
	면적				
	식제자				

임대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수익 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 연월일		연월일			
		취득 원인					
수량		취득 금액		상대방			
임대 연월일		전 소유자		변동사항			
		등기 연월일					
임대 기간		등기 번호		관리청			
		등기 목적		가액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6)

회계명 :

(선박)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분	찾아보기	비 고	
명칭 :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재지 :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주요설비 및 속구		용도		깊이	m	항해구역	
명칭	개수	선정함		넓이	m	최대적재 인원	
		등록 연월일		깊이	m	착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선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비 고
연도	내용	금액	취득 연월일		연월일		
			취득 원인		상대방		
			취득 금액		변동사항		
			전 소유자		관리청		
			등기 연월일		가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10 - 7)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종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가액						
소 유 자	주소					사 용 목 적				
	성명			전화번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신기간						
사용료		유상		무상						
증 감 이 동 상 황	연월일	적요 (증감사유)	증		감		현재		기 록	대 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그 밖의 사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작성 자		확 인	
---------	--	--------	--

회계명 : 명칭 :

재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혁	
	종목									
	등록 번호									
증감 이동 상황	연월일	문서 번호	증감 사유	증가		감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산 재평가	연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대부및 사용 상황	연월일	임차자 주소	성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고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9)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작성 자		확 인	
---------	--	--------	--

회계명 :

주식 등 종류						법 인	명칭				
1주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액			주소				
보관기관				재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 자 연 혁	연월일	금액		변동 사유			자본금				
							설립연월일				
연 월 일	적요 (증감 사유)	증		감		현재		비고 (출자 재원 등)	기록	대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10) (부동산 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신탁종류		수 탁 자	법인명				
재산 관리관			대표자				
신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소				
신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	소재지		지목	수량	가격	비고	

2면

증감 이동 상황	연월일	적요 (증감사유)	증		감		현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그 밖의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에 대한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도모하고</u> ----- ---<u>이바지</u>-----<u>사항</u>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4조의3(회의 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긴급을 요하거나</u>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의3(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개의(開議)</u>----- ----- -----<u>긴급하거나</u>----- -----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u>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u>출석시켜</u> 의견을 <u>청취하거나</u>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u>인정하는</u>----- ----- -----<u>출석하도록 하여</u>-----<u>듣거나</u>----- -----.
⑤ (생략)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u>기하여야</u>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 ----- <u>도모해야</u>----.
② (생략) 1.~5. (생략) 6. <u>전대</u> 또는 권리처분 여부 7.~10.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u>전대(轉貸)</u>----- 7.~10.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u>기록하여야</u>	③ ----- ----- -----<u>기록해야</u>----

하며 재산매각 및 <u>대부시</u>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u>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u>. 1. (생략)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u>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u> 재산 3.~5. (생략) ④ 제1항의 조사결과 <u>시정을 요하는</u>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u>즉각</u>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u>기하여야 한다</u>.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u>의하지 아니하고</u> 다른 법령의 규정에 <u>의하여</u>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u>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u>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u>사전에</u> 총괄재산관리관과 <u>협의하여야 한다</u>.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u>때에는</u> <u>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u>통보하여야 한다</u>.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u>토지위에</u>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u>한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u>동</u>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대상) ①~② (생략) <u><신설></u>	-----<u>대부 시</u>----- -----<u>관리를 철저하게 해야</u>-----. 1. (현행과 같음) 2. -----<u>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u>----- 3.~5. (현행과 같음) ④ -----<u>시정이 필요한</u>----- -----<u>즉시</u>----- -----<u>도로</u>----- <u>해야</u>-----.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u>따르지 않고</u>-----<u>법령에 따라</u>----- -----<u>취득(보상취득)해야</u>----- -----<u>미리</u>-----<u>협의해야</u>-----. ② ----- -----<u>때에는</u>----- -----<u>통보해야</u>-----.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u>토지 위에</u>----- -----<u>한정한다</u>-----. ② ----- -----<u>해당</u>----- -----. 제19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
---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u>대하여는</u>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u>징수하여야</u>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u>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u>소요되는</u>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u>등으로 인하여</u>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u>내구연수가</u>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u>아니하거나</u> 관리를 <u>태만히</u>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u>대하여는</u>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u>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1명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u>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대해서는</u>----- ----- -----<u>징수해야</u>-----. ③ (현행과 같음) ④ ----- -----<u>인정하는</u>----- ----- -----<u>드는</u>----- ----- -----. ⑤ ----- ----- ----- ----- -----<u>등으로</u>----- -----. ⑥ ----- -----<u>사용 가능 기간이</u>-----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u>않거나</u>-----<u>게을리</u>----- ----- -----<u>대해서는</u>----- ----- -----<u>해야</u>----- -----. ② -----
--	---

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③ (생 략)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는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해야-----.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대부료를 산출할 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산출해야-----

1. -----산식:----- 대부받은

2. -----산식:----- 대부받은

⑤ -----매우----- 첨부해야-----.

⑥ -----경우에는-----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라 한다)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계약일부터-----

----날부터-----.

② -----

----50만원-----

-----12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각 호와-----.

1. -----

-----경우

2. -----

-----경우

3. -----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및 그 부지를 <u>국가보훈처장</u>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생략)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u>시의 필요에 의하여</u> 매각재산을 <u>일정기간동안</u>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생략) ③~④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1~2. (생략)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u>건축법</u>」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u>경우</u>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u>면적범위</u>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u>경우</u> 4. ----- -----<u>경우</u> 5. -----<u>국가보훈부장관</u>----- ----- ② (현행과 같음) 1. -----<u>경우</u> 2. <u>시가 필요하여</u>-----<u>일정기간 동안</u>----- ----- -----<u>경우</u> 3. ----- -----<u>경우</u>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해당</u>----- -----<u>해당</u>----- -----<u>「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u>----- -----<u>경우거나</u>----- -----<u>면적범위에서</u>----- -----.
--	--

4.~8. (생 략) 9.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적합하지 <u>아니한</u> 단일 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영 제38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시와 시 <u>이</u> <u>외</u>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서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생 략) 1. 1급 <u>관사</u>: 시장 관사 2. 2급 <u>관사</u>: 부시장 관사 3. 3급 <u>관사</u>: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u>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1. (생 략) 2. 비품의 <u>망실</u> 및 훼손방지 3. (생 략) 4. (생 략)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 략)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u>에어콘</u>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3. (생 략) 4. <u>응접세트</u>, <u>카텐</u> 등 기본 장식물의	4.~8. (현행과 같음) 9. ----- ----<u>않은</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외</u> <u>의</u>----- -----<u>500</u> <u>제곱미터 이하의</u>----- ----- -----. 제47조(관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u>관사</u>:----- 2. -----<u>관사</u>:----- 3. -----<u>관사</u>:----- ----- 제49조(사용책임) ----- --(이하 “사용자”라 한다)----- <u>사용하는 경우--각 호의 사항-----</u> ----- <u>다해야-----.</u> 1. (현행과 같음) 2. -----<u>분실</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 -----<u>에어</u> <u>콘</u>----- ----- ----- 2.~3. (현행과 같음) 4. <u>응접 세트</u>-<u>커튼</u>-----
---	---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5.~8. (생략) 제59조(변상금의 납부 등) ① (생략)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u>소유지분에 의하여</u>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5.~8. (현행과 같음) 제59조(변상금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15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25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 -----<u>납부 하려는</u>----- -----<u>제출해야</u>----- ---.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 -----<u>소유지분으로</u>----- ----- ----- ----- ----- ----- ----- ----- --- <삭제>
---	--

현행

[별지 제1호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1)

작성지

확인인

회계명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구	분	색인
		중분류				토지부 등본	
소재지 :	분	소분류		부속서류		토지대장 등본	
		세분류				지적도 등본	

지	취득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적	현재 :	m ²				년도	내용	금액
토지등급								
농지등급								

인근지과세표시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시가	임대가격	시가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상대방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1)

작성지

확인인

회계명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구	분	색인
		중분류				토지부 등본	
소재지 :	분	소분류		부속서류		토지대장 등본	
		세분류				지적도 등본	

지	취득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적	현재 :	m ²				연도	내용	금액
토지등급								
농지등급								

인근지과세표시가						수익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연월일	지목	면적	거래시가	임대가격	시가표준액		조사자	취득연월일	연월일	상대방
							취득원인 <td></td> <td>상대방</td> <td></td>		상대방	
							취득금액 <td></td> <td>변동사항</td> <td></td>		변동사항	
							전소유자 <td></td> <td>관리청</td> <td></td>		관리청	
							등기연월일 <td></td> <td>가액</td> <td></td>		가액	
							등기번호 <td></td> <td></td> <td></td>			
							등기목적 <td></td> <td></td> <td></td>			
								비고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연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2)

회계명 :

(건 물)

작성
자확
인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부	구	색인
		중분류		속		속	등 기 부 등 본	
소재지 :	분	소분류		재		서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산		류	배 치 도 등 본	

연 면 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재 : m ²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 재료									
	지급 종류									
	종수		단면적							

차 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 유 자		취득년 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일		상 대 방				
차지 년월일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차 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기년 월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2)

회계명 :

(건 물)

작성
자확
인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부	구	찾아보기
		중분류		속		속	등기부등본	
소재지 :	분	소분류		재		서	건축물관리대장	
		세분류		산		류	배 치 도	

연면적		취득 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현재 : m ²						연도	내용	금액
건축연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 재료									
	지급 종류									
	종수		단면적							

임대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수익 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 연월일		연월일				
수량		취득 원인		상대방				
임대 연월일		취득 금액		변동사항				
임대 기간		전 소유자		관 리 청				
		등기 연월일		가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연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3)

회계명 :

(공작물)

작성 자		확 인	
관리자 :	구 분	색인	
소재지 :	등 기 부 등 본		
	재 치 도		
	평 면 도		

명 칭	구조형식	수 량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차 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 유 자		취득 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일		상 대 방			
차지년월일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차 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기 년월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3)

회계명 :

(공작물)

작성 자		확 인	
관리자 :	구 분	색인	
소재지 :	등 기 부 등 본		
	재 치 도		
	평 면 도		

명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연도	내용	금액

임대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수익 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 연월일		연월일			
수량		취득 원인		상대방			
임대 연월일		취득 금액		변동사항			
임대 기간		전 소유자		관리청			
		등기 연월일		가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대부 및 사용상황

연월일	임차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연월일	대부기간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작성 자		확 인	
(10 - 4)									
회계명 : (기계기구)									
관리자	대분류		형 규격 용량		용 도 연 락				
소재지	중분류								
	제조년월일								
명칭	제조사								
	제조 번호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4)

회계명 : (기계·기구)

작성 자		확 인	
---------	--	--------	--

관리자		대분류		형		용 도	
소재지		중분류		규격		연 락	
명칭		제조연월일		용량			
		제조자					
		제조번호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5)

회계명 :

(입 목 죽)

작성
자확
인

관리자 :	대분류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재지 :	소분류					
	세분류					

주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 주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제자				

차 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 유 자	취득 년월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수 량	취 득 금 액	상 대 방		
차지년월일	전 소 유 자	변동사항		
	등기 년월일			
차지기간	등 리 번 호	관 리 청		
	등 기 목 적	가 액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5)

회계명 :

[입목(立木)·죽(竹)]

작성
자확
인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주 재산	부속서류	구분	찾아보기
		중분류					
소재지 :		소분류					
		세분류					

주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 투자 상황
본수	(본) 주			
식 제 상 황	년월일			
	본수			
	면적			
	식제자			

임대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수익 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 연월일	연월일		
	취득 원인			
수량	취득 금액	상대방		
임대 연월일	전 소유자	변동사항		
	등기 연월일			
임대 기간	등기 번호	관리청		
	등기 목적	가액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6)

회계명 :

(선 박)

작성 자		확 인	
비고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비고	
명 칭 :		중분류			등기부 등본			
소재지 :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명 도			

주요설비 및 속구 명 칭	개 수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선 정 함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선제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권리취득사항			권리변동사항			비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 년월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취 득 금 액			변동사항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기 년월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증감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0 - 6)

회계명 :

(선 박)

작성 자		확 인	
비고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분	찾아보기	비고
명칭 :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재지 :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주요설비 및 속구 명 칭	개 수	용도		깊이	m	항해구역	
		선정함		넓이	m	최대적재 인원	
		등록 연월일		깊이	m	착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력		준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조자	
		선제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권리취득 상황			권리변동 상황			비고
연도	내용	금액	취득 연월일			연월일			
			취득 원인			상대방			
			취득 금액			변동사항			
			전 소유자			관리청			
			등기 연월일			가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증감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7)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부 속 서 류					
종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가 액			사 용 목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 록	대 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그 밖의 사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7)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부 속 서 류					
종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가 액			사 용 목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연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 록	대 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그 밖의 사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8) (특허권 · 기타권리)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명 칭 :									
재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 자	부 속 서 류		연 혁		
종 목											
등록 번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수량	감 소 금액	감 소 수량	현재액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액	과 표 또는 평가액	평가 자	기록	대조	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임차자 주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 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8) (특허권 · 그 밖의 권리)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명 칭 :									
재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혁		
종목											
등록 번호											
증감 이동 상황	연월일	문서 번호	증감 사유	증가 수량	감소 금액	감소 수량	현재액 금액	수량	금액		
자산 재평가	연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대부및 사용 상황	연월일	임차자 주소	성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고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9)						작 성 자		확 인	
회계명 :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주식 등 종 류						법 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년 월 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수 량 납입 금액		감 수 량 납입 금액		현 재 수 량 납입 금액		비 고 (출 자 재원 등)	기 록	대 조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9)						작 성 자		확 인	
회계명 :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									
주식 등 종류						법 인	명 칭				
1주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액			주소				
보관기관				재산 관리관			사업내 용				
출 자 연 혁	연월일	금액		변동 사유			자본금				
연 월 일	적요 (증감 사유)	증 수 량 납입 금액		감 수 량 납입 금액		현재 수 량 납입 금액		비고 (출자 재원 등)	기 록	대 조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10)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그 밖의 사항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10 - 10) (부동산 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신탁종류		수 탁 자	법인명						
재산 관리관			대표자						
신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소						
신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	소재지		지목	수량	가격	비고			

2면

증감 이동 상황	연월일	적요 (증감사유)	증		감		현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그 밖의 사항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칙의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0호서식).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 031-8075-49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취하여야” 를 “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도록” 을 “않도록” 으로, “정리하여야” 를 “정리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파악하여야” 를 “파악해야” 로,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를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얻어” 를 “받아”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임시키고자 할 때” 를 “분임하려는 경우” 로, “갖추어” 를 “갖춰” 로, “신청하여야” 를 “신청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을 “분임을 하려는” 으로 한다.

제6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고자 할” 을 “변경할” 로, “갖추어” 를 “갖춰” 로, “신청하여야” 를 “신청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소·성명·직명·연령” 을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로 한다.

제11조 중 “이관받고자 할” 을 “이관받으려는” 으로, “상호간” 을 “상호 간” 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를 “이관해야 하며,” 로, “이관 받은” 을 “이관받은” 으로, “갖추어” 를 “갖춰” 로, “보고하여야” 를 “보고해야”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권리관계증빙서류” 를 “권리관계 증명서류” 로, “보고하여야” 를 “보고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말” 을 “매년 12월 31일” 로, “보고하여야” 를 “보고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 를 “보고해야” 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환하고자 하는” 을 “교환하려는” 으로, “갖추어” 를 “갖춰” 로, “신청하여야” 를 “신청해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중 “쌍방재산” 을 각각 “양쪽 재산” 으로 한다.

제38조 중 “교환함에 있어서” 를 “교환할 때” 로, “상응 하지 아니할 때” 를 “상응하지 않을 경우” 로, “납입하여야” 를 “납입해야” 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증빙서류” 를 “증명서류” 로, “비치하고” 를 “갖춰 두고” 로, “유지하여야” 를 “유지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사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해야 한다.

제42조 중 “비치하고” 를 “갖춰 두고” 로, “정리하여야” 를 “정리해야” 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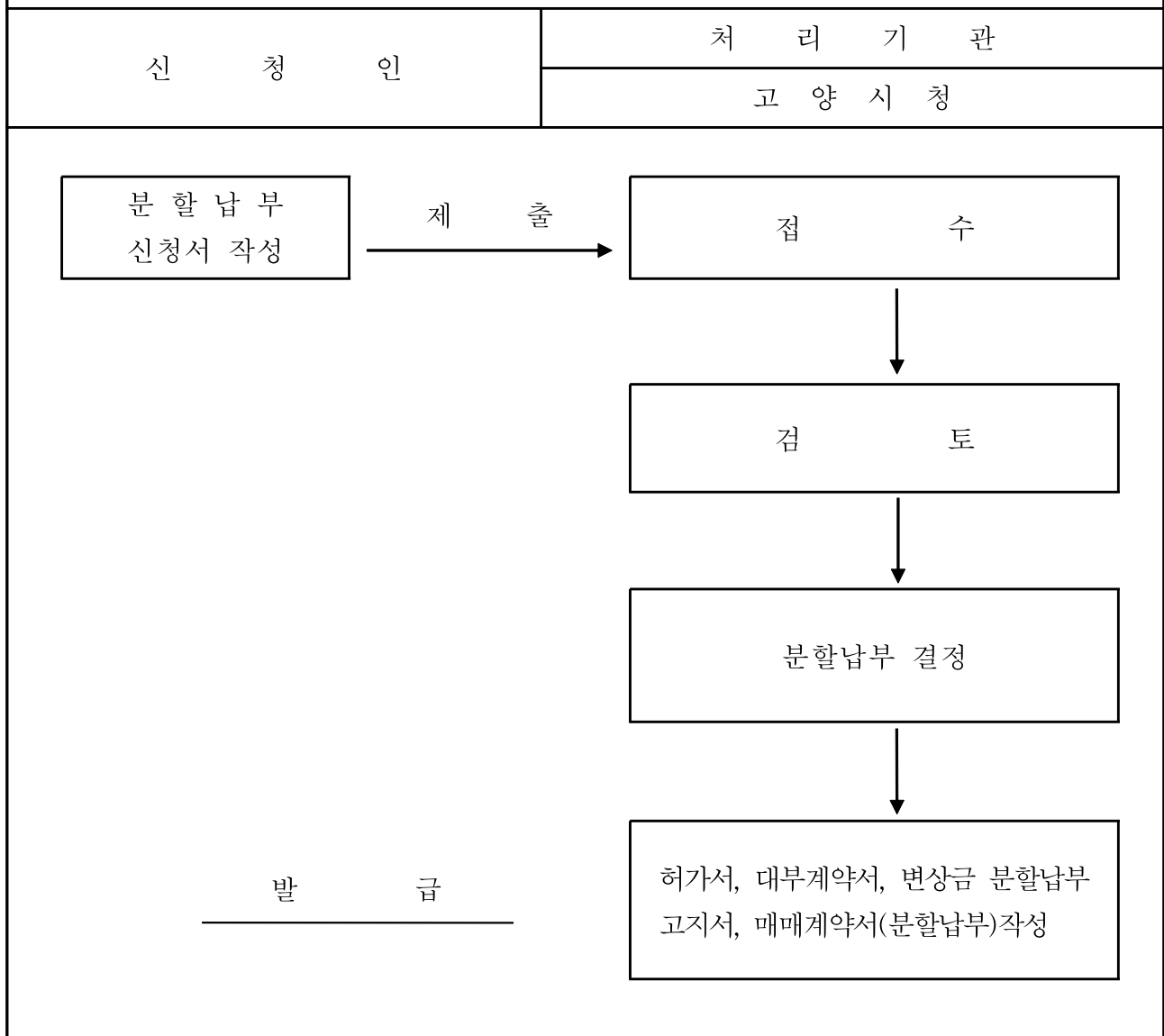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재산관리과장 김 학 배
	팀 장 성 명	재산관리팀장 양 정 길
	담 당 자 성명·전화	노 인 선 031-8075-2893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1. 사용료(대부료):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2. 변상금: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가.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 나. 15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 다. 25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

제4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5. (생략)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야-----. ③ ----- ----- -----않도록----- -----정리해야----- -. ④ ----- -----파악해야-----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 ⑤ (현행과 같음) ⑥ ----- -----받아----- -----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 ----- -----분임하려는 경우----- -----갖춰----- -----신청해야-----. 1. (현행과 같음) 2. 분임을 하려는----- ----- 3.~5.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인의 지정) ----- ----- -----변경할----- -----갖춰-----신청해야----- -----. 1. (현행과 같음)
--	---

2. 관리인의 <u>주소 · 성명 · 직명 · 연령</u> 및 <u>경력</u> 3.~5. (생략)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u>이관받고자</u>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u>상호간</u>에 협의하여 <u>이관하여야</u> 하며 <u>이관</u>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u>갖추어</u> <u>보고하여야</u> 한다.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u>권리관계증빙서류</u>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u>매년 말</u>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u>교환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갖추어</u> 시장에게 <u>신청하여야</u> 한다. 1. 교환할 <u>쌍방재산</u>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생략) 3. 교환할 <u>쌍방재산</u>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할 <u>쌍방재산</u>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u>주소, 성명, 직명, 나이</u> ----- 3.~5.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 ----- ---<u>이관받으려는</u>----- -----<u>상호 간</u>-----<u>이관해야</u> <u>하며 이관받은</u>----- ----- -----<u>갖춰</u> <u>보고</u> <u>해야</u>-----.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 ----- ----- ----- -----<u>권리관계 증명서류</u> ----- -----<u>보고해야</u>-----. ② ----- -----<u>매년 12월 31일</u>----- -----<u>보고해야</u>-----. ③ ----- ----- ----- -----<u>보고해야</u>-----. 제36조(교환) ----- <u>교환하려는</u>----- -----<u>갖춰</u>-----<u>신청해야</u> -----. 1. -----<u>양쪽 재산</u>----- ----- 2. (현행과 같음) 3. -----<u>양쪽 재산</u>----- ----- 4. -----<u>양쪽 재산</u>----- -----
---	---

5. 교환할 <u>쌍방재산</u>의 등기부등본 6.~7. (생략)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u>상응</u>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u>납입</u>하여야 한다.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u>증빙서류</u>를 함께 <u>비치</u>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u>유지</u>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건·특허권기타권리·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u>갈음</u>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u>부분</u>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u>비치</u>하고 <u>정리</u>하여야 한다.	5. ----<u>양쪽 재산</u>----- 6.~7. (현행과 같음)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u>교환할 때</u>-----<u>상응하지 않을 경우</u>----- -----<u>납입</u>해야-----.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 ----- -----<u>증명서류</u>-----<u>갖춰 두고</u>----- -----<u>유지</u>해야-----.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사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해야 한다. 제42조(임차재산) ----- ----- -----<u>갖춰 두고</u>-<u>정리</u>해야-----.
---	--

현행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 사용료(대부료)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변상금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table border="1" data-bbox="174 606 1084 683"> <tr> <td data-bbox="174 606 593 646">신청인</td><td data-bbox="593 606 1084 646">처리기관</td></tr> <tr> <td data-bbox="174 646 593 683"></td><td data-bbox="593 646 1084 683">고양시청</td></tr> </table>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검토 ↓ 분할납부 결정 ↓ 교부 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 분할 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분할납부)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고양시청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1. 사용료(대부료):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2. 변상금: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가.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나. 15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다. 25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table border="1" data-bbox="1124 606 2033 683"> <tr> <td data-bbox="1124 606 1543 646">신청인</td><td data-bbox="1543 606 2033 646">처리기관</td></tr> <tr> <td data-bbox="1124 646 1543 683"></td><td data-bbox="1543 646 2033 683">고양시청</td></tr> </table>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검토 ↓ 분할납부 결정 ↓ 발급 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 분할납 부고지서, 매매계약서(분할납부)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고양시청
신청인	처리기관								
	고양시청								
신청인	처리기관								
	고양시청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8년 일부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채권자의 보고 의무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예산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예산담당관 재정기획팀(031-8075-2307)

- 팩 스 : 031-8075-490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시장으로부터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자에게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채무보증승인통지서의 통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예산담당관 신 영 호
	팀 장 성 명	재정기획팀장 박 한 나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혜 선 031-8075-2307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고양시장 귀하

채무자 :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고양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퍼센트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또는 그 밖의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고양시장은 다목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고양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고양시가 보증하는 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채권자 또는 그 밖의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고양시장은 다목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고양시장 귀하

채권자 :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고양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 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채 무 보 증 서

제 호

귀하

고양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양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고양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고양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
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고양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중요사항대비표

[illegible]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이후 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자치회의 생산적 운용을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7.)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23조 및 제26조).
- 나. 동 주민자치회의 정수 기준을 현실화 함(안 제7조).
-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 라. 위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 후 추천과 심사로 하며, 추천으로 선정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주민총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8항).
- 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함(안 제24조).
- 사.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 아. 주민자치센터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031-8075-2442)
 - 팩 스 : 031-8075-496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동에 두는”을 “동”으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를 “해당 동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 및 설치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으로 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란 행정구역 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8조제1항”을 “특별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제7조 중 “5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5. 제24조에 따른 임기와 한 차례의 연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해야”로, “약자 등 다양한”을 “약자, 다양한 나이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추첨 및 추천모집 각 위원의”를 “제1항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하되, 제1항제1호는 추첨방식으로, 제1항제2호는 선정방식으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1. 추첨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심사방식: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선정 대상인 경우 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2. 2년 이상 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3. 2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동장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부에서 동장과 자

치회장이 각각 3명씩 무작위로 추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정위원회의 기능)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천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 안배, 사회적 약자, 나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보고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를 “주민자치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문은”을 “고문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개최하며”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동의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의 주민참여예산”을 “주민 참여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그 자치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라 회의개최”를 “따른 회의 개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 및 사고 등으로 임시회”를 “사유로 회의”로, “없으면”을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임시회”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을 “개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주민자치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23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를 “이 경우”로, “제11조의 위촉절차”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을 “이

상의”로, “제8조제1항 단서”를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2.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치회장·부회장·감사의 불신임 의결)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부회장·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 자치회장·부회장·감사는 해당 직에서 해임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관여하였던”을 “관여했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설(사무공간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을 “시설(사무공간을 제외한다)을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 규정”을 “단서”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그”를 “반기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을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납부할 의

무를 진다”를 “납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받고자 하는”을 “반환받으려는”으로, “신청서는”을 “신청서는”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관련 경진대회 출전 참가자 및 팀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진대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자료제작비 등의 경비
2.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숙박비, 급량비, 교통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매식비 기준 단가 이내로 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직접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 장비 등의 경비
2.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숙박비, 급량비, 교통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매식비 기준
단가 이내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정한다”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
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의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
해서도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다
만, 이 조례 시행 당시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
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 성 장 명	주민자치팀장 윤 금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승 재 031-8075-24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u>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생 략)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u>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u> 2. (생 략) 3. “단체”란 관할구역 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비영리 목적의 민간단체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또는 동 주민의 문화·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5. (생 략) 6. “분회”란 법정동, 마을단위 등 동 관할구역 안에서 주민 스스로 보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u>동</u>----- <u>설치 및 운영 등</u>-----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해당 동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 및 설치되어</u>----- ----- -----. 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란 행정구역 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4. -----<u>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u>----- -----. 5. (현행과 같음) 6. ----- <u>행정구역</u>-----

밀접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적정구역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하위기구를 말한다. 7. (생략)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라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항상 거주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 7.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 1.~3.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① 특별법 제40조제2항----- ----- -----. 1.~2. (현행과 같음) ② ----- ----- -----있다.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 -----30명----- --. 제8조(위원의 자격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
---	--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4조에 따른 임기와 두 차례의 연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5. 제24조에 따른 임기와 한 차례의 연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삭 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축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삭제<2021.12.31.>

제10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시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미디어(영상, 음성, 인쇄매체, 방송을 포함한다)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2.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3. 수탁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시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삭 제>

제11조(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
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
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추첨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
청하고 공개 추천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 또는 입주자대
표회의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된 사람. 추천은 해당소속
단체 등의 임직원 및 소속원에 한하
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공개추첨 및 추천모집 각 위원의
수는 정수의 범위에서 모집공고 전 주
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사전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
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
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각 5명 이내에서 정하
되, 제1항제1호는 추천방식으로, 제1항
제2호는 선정방식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생략)

⑦ 주민자치회 위원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

제11조(위원의 선정 등) ① -----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해야-----약자, 다양한 나이대 및

-----.

1. 추천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 추천
을 통해 선정(이 경우 전체 위원 수
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심사방식: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② 제1항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위원--

-----.

<삭 제>

④ -----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

-----.

⑥ (현행과 같음)

⑦ -----

다. 다만, 전임 위원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생략)

2.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 감사 및 고문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 감사 및 고문이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⑪ (생략)

제13조(선정위원회) ① 제11조제8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회장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선정 대상인 경우 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2. 단체 추천위원 2명. 다만, 단체 추천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동장이 공개 추천하여 정한다.

3. 자치회장 추천위원 1명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천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④ 선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별 지역안배, 사회적 약

----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제6항-----

⑧ -----

-----새로

공개해야-----.

⑨~⑪ (현행과 같음)

제1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선정 대상인 경우 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2. 2년 이상 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3. 2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동장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자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부에서 동장과 자치회장이 각각 3명씩 무작위로 추천한다.

제13조의2(선정위원회의 기능)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천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 안배, 사회적 약자, 나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및 사무국) ①~③ (생 략)

④ 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1.~2. (생 략)

제16조(감사) ① (생 략)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 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7조(고문) ① 주민자치회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라 해촉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자치회장이 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제15조(간사 및 사무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고려-----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③ -----

-----보고
해야-----.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고문) ① 주민자치회에-----

-----.

② -----고문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③~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 -----
-----개최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u>연도 상반기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 ② (생 략) 1.~2. (생 략) 3. <u>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u> 4. <u>동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u> 5. (생 략) ③~⑦ (생 략) <u><신 설></u>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u>수립한다.</u> 1.~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1조(회의 및 운영) ① (생 략) 1.~2. (생 략) 3. <u>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u>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u>경우 및 사고 등으로 임시회 개최를 통보할 수 없으면</u> 위원 중 최고연장자 순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고 해당 <u>임시회에서</u>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다음 연도</u>----- 4. <u>주민참여예산</u>----- 5. (현행과 같음) ③~⑦ (현행과 같음) ⑧ <u>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u>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 ----- -----수립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그 자치계획안----- -----. <u><삭 제></u>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주민자치회 위원</u>----- ----- ② -----<u>따른 회의 개최</u>----- -----사유로 회의-----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회의-----.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⑦ (생략) 제22조(위원의 의무) ① (생략) ② 주민자치회 위원회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u>적합하여야</u>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신설> 제23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11조의 위촉절차에 따른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u>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제26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 1. (생략) 2.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u>해당되지 않는 경우</u>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8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8. (생략)	③ ----- <u>개의</u>----- -----. ④~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적합해야</u>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주민자치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23조(정치적 중립) ----- <u>특별법 제40조제5항</u>----- ----- -----.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u>주민자치회 위원</u>-----<u>한 차례</u>----- ---<u>이 경우</u>-----<u>제11조</u> -----. <삭제> 제26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u> 3. ----<u>이상의</u>----- -----<u>제8조제2항</u>----- ----- 4. -----<u>특별법 제40조제5항</u>----- ----- 5. <u>특별법 제40조제5항</u>----- ----- 6.~8. (현행과 같음)
--	---

<신 설>

라 다른 시설 또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한다.

제31조(관리·운영) ①~② (생략)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4조(사용료 등) ①~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⑦ (생략)

제35조(이용 등) ①~② (생략)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략)

제3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이용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서는 동장에게, 수강료 환불 신청서는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1조(관리·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고려-----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료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사용해야-----반기별-----
-----매년 1월 20일 및 7월 20일-----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하려는-----

-----납부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

-----반환
해야-----
-----.

1.~3. (현행과 같음)

② -----반환받으려는-----신청서는-----

-----.

제37조(운영평가 및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참가자(팀)
2. 작품전시회 작품제출자(팀)
3.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강사 등

②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회원, 자원봉사자, 참여를 희망한 시민에게 직접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운영비 및 교육장비 등의 경비
2. 교통비(차량임차료)
3. 급식비(식비, 간식비)

제39조(보고) ①~② (생략)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4. (생략)

제40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주민참여 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39조(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행해야-----.

- 1.~4. (현행과 같음)

제40조(시장의 책무) ① -----

-----노력해야-----.

② -----

-----노력해야-----.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전년도 개인분 주민세 징수분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생략)

1.~2. (생략)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설>

③ -----

---협력해야-----.

④ -----
-----노력
해야-----.

제41조(지원 등) ① -----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⑥ 시장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관련 경진대회 출전 참가자 및 팀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진대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자료제작비 등의 경비

2.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숙박비, 급량비, 교통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매식비 기준 단가 이내로 한다)

<신 설>

제4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직접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 장비 등의 경비
2.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숙박비, 급량비, 교통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매식비 기준 단가 이내로 한다)

제46조(운영세칙) -----

-----한다.
다. 이 경우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u>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u> (제34조제3항 및 제5항 관련) ☐ 감면대상자(비율) 및 교육생 수강료 ○ 감면대상자 - (생략) -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국가유공자</u>	[별표] <u>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u> (제34조제3항 및 제5항 관련) ☐ 감면대상자(비율) 및 교육생 수강료 ○ 감면대상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 기본 교육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나. 위원 모집을 자치회 사정에 맞게 연 4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 다.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 라.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표 등 조례 일부개정안에 맞게 별지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031-8075-2442)

- 팩 스 : 031-8075-496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서(추첨용)”를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를 “개인정보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의 신청서 또는 제2호의 추천서와”를 “제1항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초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으로,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선정위원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재직증명서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그 밖에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조례 제13조제3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 제11조 및 제13조”를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로, “추천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회장”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동장은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위원의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을 “자치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2호서식”을 “제1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를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00명(해당년도 1월말)”을 “1만명(해당 연도 1월 31일)”으로 한다.

제13조 중 “비치해야”를 “갖춰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고”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손상하였거나”를 “손상했거나”로,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하였을”을 “승인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경우에는”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취된”을 “만취한”으로 한다.

제30조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징수하고자 하는”을 “징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할”을 “사용하려는”으로, “주민자치회장”을 “자치회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장”을 “자치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금액. 이 경우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를 “금액(이 경우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불받고자 하는”을 “환불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호다목 중 “위탁사업”을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신청서(추첨용)”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전자우편주소란”을 “이메일(전자우편)주소란”으로 하며, 같은 서

식 교육이수여부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최근주요경력(봉사 활동)사항란 다음 란 중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활동하고자”를 “활동하기 위하여”로, “(서명 또는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선정 방법	· 추천방식 () / 심사방식 ()
----------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분란 중 “추천”을 “심사”로 하고, 같은 서식 “위촉일란”을 “선정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구분란 중 “추천”을 “심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종전의 제12호서식) 중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고

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 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연락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협조란 및 동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장 성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장 성명	주민자치팀장 윤 금 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 승 재 031-8075-2442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기관(단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관(단체) 주소]		이메일(전자우편)주소
주요 경력사항 (봉사활동)	0000년00월00일	내 용	
해당 자격 여부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자격 ☐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 2년 이상 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 2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원 사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구 ○○동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 ○○구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

연번	등록일	자격분야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비 고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반명함 사진, 직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을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3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명함 사진,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나이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의회자료 제출	<u>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일부터 3년</u>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동의 ☐ 미동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u>고양시, 고양시 관할 구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의회</u>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u>고양시 주민자치회 통계수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기초자료, 고양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의회 감사를 위한 자료제공</u>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명함 사진,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일부터 3년</u>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 ○○구 ○○동장 귀하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주소								(휴대전화)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관적 평가 (10점)	선정 위원	1. 자원봉사활동 (2년 이내)	50시간 이상	5		-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3		
			1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		
		2. 사회적 약자 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5		- 신청인이 증명
			해당없음	0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비고
			A	B	C	D		
주관적 평가 (90점)	선정 위원	1. 지원동기	10	7	4	1		
		2. 자치활동 경력 및 관심	30	22	14	6		
		3. 지역에 대한 이해도	25	17	9	1		
		4. 자치활동 참여 의지	15	11	7	3		
		5. 인품, 태도 등	10	7	4	1		
소계								
총계								

심사자	선정위원회 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	----------	-------	------------

제 00-0000-0000호

위 축 장

고양시 ○ ○ 구 ○ ○ 로(○○동)

성 명 : ○ ○ ○

귀하를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구 ○○동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 ○○. ~ ○○○○. ○○. ○○.】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 ○ 동장

○○ 동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 보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감사 결과에 첨부하는 사항임

1. 감사대상 업무

사 업 명	
감사기간	
총 평	

2. 주요감사 실시 내용

구 분	내 용		
	세부사업명	감사일시	수행 내용
감사 주요 내용			

3.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외부전문가 활용	- 수행 시기: 20 . . . ~ 20 (일) - 주요 내용:

3-1. 외부전문가 인적 사항

직업(자격)	성명	사업체명	활용 사업명	비 고

4. 주요 감사 세부 내용 ¹⁾

구 분	내 역		
세부사업명			
감사일시 ²⁾	- 수행 시기 : 20 ~ 20 (oo일) - 총 투입 인력 : ○○○명, ○○○, ○○○		
감사 내용 ³⁾	수행 시기	투입 인원	세부 수행 내용
	 ~ (일)	()명, ○○○	
	 ~ (일)	()명, ○○○	
	 ~ (일)	()명, ○○○	
	 ~ (일)	()명, ○○○	
	 ~ (일)	()명, ○○○	
	 ~ (일)	()명, ○○○	
감사 지적 사항	- - -		
권고 사항	- - -		

5. 보고자

성명	직책	주민자치회 보고일시	비고

주:1) 2. 주요감사 실시 내용 중 세부사업별 작성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 감사에 투입한 감사자 성명

3) 세부사업 중 구체적인 감사 내용 작성

210mm × 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위원의 <u>공개모집</u> 또는 <u>추천</u>에 신청하 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u>신청서(추첨용)</u> 2.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u>추천서(추천용)</u> 3. 별지 제3호서식: <u>주민자치회 개인정보 보처리(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u> ② 동장은 <u>제1항제1호의 신청서</u> 또는 <u>제2호의 추천서</u>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u>주민등록초본</u> 2. <u>사업자등록증</u> 또는 <u>법인등기사항증 명서</u> 3. <u>재직증명서</u> 4. <u>주민자치 기본교육 수료확인증(제5 조에 따른 교육 및 유효기간에 한정 한다)</u> 5. (생략) ③ 동장은 <u>제1항에 따른 사항</u>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접 수부에 <u>기재</u>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 일 이내에 시장에게 접수부를 제출해 야 한다. <u><신 설></u>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① - -----<u>공개모집</u>----- ----- -----. 1. ----- <u>신청서</u> <u><삭 제></u> 3. -----<u>개인정보처리</u>--- ----- ② -----<u>제1항 및</u>----- ----- ----- ----- -----. 1. <u>주민등록표초본</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된</u>----- -----<u>기록</u>----- ----- -----. <u>제4조의2(선정위원회 위원의 신청 등)</u> ① <u>조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u>

<u>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신청자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u> <u>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u> <u>2.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u> <u>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u> <u>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료확인증을 발급한다.</u> <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에게</u>	<u>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별지 제2호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u> <u>2.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u> <u>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u> <u>1. 주민등록표초본</u> <u>2. 재직증명서</u> <u>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u> <u>4. 그 밖에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u>③ 조례 제13조제3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u> <u><삭 제></u>
--	---

통보해야 한다.

④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료확인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선정위원회 심사 등) ①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추천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자치회장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반기별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외부감사와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신설>

②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감사 결

제6조(선정위원회 심사 등) ① ---제11조제1항제2호-----위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동장은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위원의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

-----자치회장-----

-----.

1.~3.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

과를 주민총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제12호의2서식 ----- -----.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자치회장은 동 주민의 1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해당년도 1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 -----1만명(해당년도 1월 31일)-----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3조(회의록) ----- ----- ----- -----갖춰야 -----.
제1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1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 ----- -----갖추고-----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강사의 위촉·해촉) ① (생 략)	제21조(강사의 위촉·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호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강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손상했거나----- ----- -----적당하지 않다고-----

3. (생 략)

③ (생 략)

제27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 여부,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술에 만취된 사람

3.~5. (생 략)

제30조(프로그램 이용신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회장은 신청자에게 수강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31조(수강료) ①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설사용 등) ① -----
-----사용하려
는-----

---.

② -----

-----승인했을-----

-----.

③ -----사
용하려는-----

-----적합하지
않다고-----경우-----
-----.

제29조(이용의 제한) -----호
-----사람에게-----

--.

1. (현행과 같음)

2. -----만취한-----

3.~5. (현행과 같음)

제30조(프로그램 이용신청) -----
-----이용하려는-----

-----.

제31조(수강료) ① -----
-----징수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3조(수강료 환불) ① 주민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생략)

가. (생략)

나. 개강 이후: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 경우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사무위임) (생략)

1. (생략)

가.~나. (생략)

다. 위탁사업 점검

라. 주민자치센터 평가, 경연대회 및

하려는-----

-----.

② -----
사용하려는-----
-----자치회장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수강료 환불) ① 자치회장-----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금액(이 경우 환불
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
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
청해야 한다)

2. -----
등으로-----
--

3.~4. (현행과 같음)

② -----환불받으
려는-----
-----.

제35조(사무위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주민자치센터-----

<삭제>

<u>박람회 참가 지원 등</u> 마.~사. (생 략) 2. (생 략)	마.~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첨용)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단체)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소 [사업장(단체) 주소]		이메일(전자우편)주소
지원 사유				지원 사유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이 수 () / 미 이 수 () * 주민자치회 위원은 사전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선정 방법	· 추첨방식 () / 심사방식 ()		
최근 주요 경력 (봉사 활동) 사항	기간	내용		최근 주요 경력 (봉사 활동) 사항	기간	내용	
	~				~		
	~				~		
	~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라 고양시 ○○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 ○○구 ○○동장 귀하				고양시 ○○구 ○○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추천용)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피 추 천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단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단체)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 요 경 력 사 항 (봉사 활동)	0000년00월00일	내 용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이 수 () / 미 이 수 () * 주민자치회 위원은 사전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추천 사유			
추천 기관 (단 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 대상자 (피추천인 000)를 고양시 00구 00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단체) (관인 또는 서명)

고양시 00구 00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기관(단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관(단체) 주소]	이메일(전자우편)주소	
주 요 경 력 사 항 (봉사 활동)	0000년00월00일	내 용	
해당 자격 여부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자격 □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 2년 이상 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 2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원 사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00구 00동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 00구 00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2호의2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부

연번	등록일	자격분야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반명함 사진, 직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위원 추천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천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명함 사진,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의회자료 제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고양시, 고양시 ○○구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 의회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고양시 주민자치회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고양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의회 감사를 위한 자료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반명함 사진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 ○○구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반명함 사진, 직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을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명함 사진,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나이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의회자료 제출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일부터 3년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동의 ☐ 미동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고양시, 고양시 관할 구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의회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고양시 주민자치회 통계수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기초자료, 고양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의회 감사를 위한 자료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명함 사진,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원 및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 ○○구 ○○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

[illegible]

[별지 제4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제00-0000-0000호

수료확인증

과정명 :

인정시간 :

교육기간 :

성명 :

위 사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
교육 과정 ()시간을 성실히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 ○ ○ ○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주소	(휴대전화)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고
객관적 평가 (50점)	동장	1. 거주·재직 기간	5년 이상	10		
			2년 이상 5년 미만	7		
			2년 미만	4		
		2. 행정기관 상훈 (중앙, 도, 시)	행정기관 상훈 2회 이상	5		- 상장 사본
			행정기관 상훈 1회	3		
			행정기관 상훈 없음	1		
		3. 경력 (전 공무원, 사정 참여 조직, 사인 사정단체, 공동체 자원조직 경력)	10년 이상	10		- 재직·경력증명서
			3년 이상 10년 미만	7		
			1년 이상 3년 미만	5		
			6개월 이상	3		
		4. 자원봉사활동 (2년이내)	50시간 이상	10		-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7		
			1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5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		
		5. 자치 공동체 사업 수행자 (2년이내)	공동체사업 수행 3회 이상	5		- 「고양시 자치공 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자치공동체사업자
			공동체사업 수행 2회	4		
			공동체사업 수행 1회	3		
		6. 자치교육 수료 (2년이내)	없음	0		
			25시간 이상	5		- 관련 증빙서류 등
			6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3		
		7. 사회적 약자 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5		- 참여자 본인인 증명
			해당없음	0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 ○ ○

(서명/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특점	비고
			A	B	C	D		
주관적 평가 (50점)	심사 위원	1. 지원동기	8	6	4	2		
		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	14	11	7	3		
		3. 자치활동 참여 의지	14	11	7	3		
		4. 인품, 태도 등	14	11	7	3		
소계			50					
총계			100					

심사자

선정위원

○ ○ ○

(서명/인)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주소	(휴대전화)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 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고
객관적 평가 (10점)	선정 위원	1. 자원봉사활동 (2년 이내)	50시간 이상	5		- 자원봉사센터 실적증명서 등
			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3		
			1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		
		2. 사회적 약자 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5		- 신청인이 증명
			해당없음	0		

구분	심사 자	심사항목	배점				특점	비고
			A	B	C	D		
주관적 평가 (90점)	선정 위원	1. 지원동기	10	7	4	1		
		2. 자치활동 경력 및 관심	30	22	14	5		
		3. 지역에 대한 이해도	25	17	9	1		
		4. 자치활동 참여 의지	15	11	7	3		
		5. 인품, 태도 등	10	7	4	1		

소계

총계

심사자

선정위원회 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고양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명부

[illegible]

[별지 제7호서식]

고양시 〇〇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명부

[illegible]

<신 설>

[별지 제8호의2서식]

제00-0000-0000호

위 축 장

고양시 ○ ○ 구 ○ ○ 로(○○동)

성 명 : ○ ○ ○

귀하를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구 ○○동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 ○○. ~ ○○○○. ○○. ○○.】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 ○ 동장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고문 위촉·해촉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고문 위촉·해촉 관리대장

[illegible]

<신 설>

[별지 제12호서식]

(2쪽 중 제1쪽)

○○ 동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 보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감사 결과에 첨부하는 사항임

1. 감사대상 업무

사 업 명	
감사기간	
총 평	

2. 주요감사 실시 내용

구 분	내 용		
	세부사업명	감사일시	수행 내용
감사 주요 내용			

3.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외부전문가 활용	- 수행 시기: 20 . . . ~ 20 . . . (일) - 주요 내용:

3-1. 외부전문가 인적 사항

직업(자격)	성명	사업체명	활용 사업명	비 고

210mm × 297mm[백상지(80g/㎡)]

4. 주요 감사 세부 내용 ¹⁾

구 분	내 역		
세부사업명			
감사일시 ²⁾	- 수행 시기 : 20 ~ 20 (00일) - 총 투입 인력 : 00명, 000, 000		
감사 내용 ³⁾	수행 시기	투입 인원	세부 수행 내용
	. . . ~ . . . (일)	()명, 000	
	. . . ~ . . . (일)	()명, 000	
	. . . ~ . . . (일)	()명, 000	
	. . . ~ . . . (일)	()명, 000	
	. . . ~ . . . (일)	()명, 000	
	. . . ~ . . . (일)	()명, 000	
감사 지적 사항	- - -		
권고 사항	- - -		

5. 보고자

성명	직책	주민자치회 보고일시	비고

주:1) 2. 주요감사 실시 내용 중 세부사업별 작성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 감사에 투입한 감사자 성명

3) 세부사업 중 구체적인 감사 내용 작성

[별지 제12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감사결과

건 명			
분 야	운영, 회계	기 간	
범 위			
지적사항	1.		
	2.		
	3.		
	4.		
	5.		
권고사항	1.		
	2.		
	3.		
년 월 일			
고양시 ○○구 ○○동 주민자치회장 (인)			

[별지 제12호의2서식]

○○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감사결과

건 명			
분 야	운영, 회계	기 간	
범 위			
지적사항	1.		
	2.		
	3.		
	4.		
	5.		
권고사항	1.		
	2.		
	3.		
년 월 일 고양시 ○○구 ○○동 주민자치회장 (인)			

[별지 제13호서식]

○○○○년도 「○○○동 주민총회」 참석자 서명부

0000. 00. 00.(요일) 00:00~00:00 / 장소:)

[illegible]

[별지 제13호서식]

○○○○년도 「○○○동 주민총회」 참석자 서명부

0000. 00. 00.(요일) 00:00~00:00 / 장소:)

[illegible]

[별지 제30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증 제 호					
년도	결 재	간사(회계)	부회장	자치회장	
	협조	동장			
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					
결 의	년 월 일				
수입부등기	년 월 일				
수입전표	년 월 일				
금 원(금 원)					
수 입 처					
수입항목	세 부 사 항		비 고		
계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증 제 호					
년도	결 재	간사(회계)	부회장	자치회장	
아래와 같이 수입을 결의함					
결 의	년 월 일				
수입부등기	년 월 일				
수입전표	년 월 일				
금 원(금 원)					
수 입 처					
수입항목	세 부 사 항		비 고		
계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수강료 환불 신청서						
프로그램명	납부자 성 명	수강료 납부일	납부 금액	반 환 신청액	반환신청 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고양시 ○○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환 불 결 의 서						
년도	간사(회계)	부회장	자치회장	<u>협조</u>	<u>동 장</u>	
발 의					(인)	
반 환 일					(인)	
현 금 출 납 부 기 재					(인)	
수 강 료 수 납 부 기 재					(인)	
금 원(금 원)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illegible]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4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7-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4호선 외 1개소(누림교회 진입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7-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소로3-654호선, 중로1-131호선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1	131	6~20	보조간선도로	3,434	벽제동 산2-19	벽제동 612-1	일반도로		경기도 고시 제440호 (74.12.16)	
	소로	3	654	7	국지도로	400	중로1-131호선 벽제동 산51-3	벽제동 543-24	일반도로		고양시 고시 제2022-53호	
금회시행	중로	1	131	3	보조간선도로	74	벽제동 514-1	벽제동 산 51-3	일반도로			
	소로	3	654	7	국지도로	400	중로1-131호선 벽제동 산51-3	벽제동 543-24	일반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13번길 15, 한강 능곡역 성원상떼빌 3층
- 성명 : 기독교대한감리회 누림교회 대표 송춘식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벽제동	517-11	도	226	16	-	고양시				
2	"	514-1	도	936	9	-	고양시				
3	"	517-1	답	2,435	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을로 1*, 30*동 *00*호	김*석	서울 중구 청정로1가 75	농협 중앙회	지상권 근저당	
4	"	517-2	도	466	185	-	고양시				
5	"	517-5	대	908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1**(벽제동)	윤*두				
6	"	517-6	도	18	1	"	윤*두				
7	"	517-7	도	57	57	"	윤*두				
8	"	517-8	답	1,001	4	"	윤*두				
9	"	518-3	대	498	4	경기도 파주시 *향기로 4**, 1**1동 1*0*호	이*진, 김*식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압국정 금융센터	근저당	
10	"	518-4	전	1	1	"	이*진, 김*식				
11	"	519-16	전	2	2	"	이*진, 김*식				
12	"	519-17	전	13	13	"	이*진, 김*식				
13	"	519-4	전	47	47	경기도 덕양구 화*로 1**, 5*3동 *0*호(화정동, **마을)	주*형				
14	"	519-7	전	217	217	경기도 파주시 *향기로 4**, 1**1동 1*0*호	이*진, 김*식				
15	"	519-8	전	129	50	"	이*진, 김*식				
16	"	520-2	도	23	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	김*곤				
17	"	522-2	천	1,155	6	-	경기도				
18	"	523-1	천	361	7	-	경기도				
19	"	523-6	답	235	23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 *촌마을 *07-*04	심*수				
20	"	523-7	차	886	1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로 1*4, 5*3동 *04호(화정동, **마을)	김*현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	지상권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1		"	523-8	대	1,549	7	"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중소기 업은행	근저당	
22		"	523-9	도	892	752	"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	근저당	
23		"	523-10	대	657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로 *06번길 4*(벽제동)	(주)하*문	"	"	지상권 근저당	
24		"	523-11	답	1,916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로 1*4, 5*3동 *04호(화정동, **마을)	김*현	"	"	근저당	
25		"	523-15	대	1,323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로 **2(벽제동)	하*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하이트 진로주 식회사	근저당	
26		"	523-16	답	661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로 *06번길 *1~*6(벽제동)	이*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106번길 31-36(벽제동)	우리은 행	근저당	
27		"	523-20	답	1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 *촌마을 *07~*04	심*수				
28		"	523-21	도	23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3~*	조*식				
29		"	523-22	도	20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로 1*4, 5*5동 *02호(화정동, **마을)	박*을				
30		"	523-23	도	43	43	경기도 파주시 교*로 *0, *12동 1*0*호(목동동, **마을 *단지)	서*영				
31		"	523-27	도	62	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로*번길 *7~*1(관산동)	최*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27(방화동)	농협 외 6	근저당	
32		"	543-23	답	1,208	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로 1*4, 5*3동 *04호(화정동, **마을)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	지상권 근저당	
33		"	543-24	답	397	371	"	김*현	"	"	근저당	
34		"	679-34	구	2,558	134	-	국(환경부)				
35		"	679-35	구	1,944	31	-	국(환경부)				
36		"	679-36	구	2,056	438	-	국(환경부)				
37		"	691	도	4,123	5	-	국(국토부)				
38		"	692-1	도	444	16	-	국(국토부)				
합계		-	-	-	29,463	3,079						

[지장물 조서]

번 호	종 별	수 량	면 적	비고
1	한전주	11.0		
2	통신주	9.0		
3	도로표지판	1.0		
4	석축	3.0	3.50㎡	
5	컨테이너	2.0	58.40㎡	
6	조립식 건물	2.0	28.10㎡	
7	캐노피(전기차 충전소)	1.0	20.00㎡	

- 부속건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방향	구조	면적(㎡)	비고
1	벽제동	523-9	좌	조립식	9.0	
			좌	조립식	19.1	
			우	컨테이너	29.2	
			우	컨테이너	29.2	
			좌	캐노피(전기차 충전소)	20.0	

- 구조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위치(STA)	방향	구조	소유자	비고
1	벽제동	0+79.4~0+86.5	우	석축		
2	벽제동	0+168.5~0+173.3	좌	석축		
3	벽제동	0+178.6~0+181.8	좌	석축		

- 도로시설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위치(STA)	방향	구조	관리청	비고
1	벽제동	0+64.1	우	단주식 주의표지판(횡단보도)	고양시	

- 한전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위치(STA)	방향	전주번호	관리청	비고
1	벽제동	0+29.8	우	9635S-221-131	한국전력	
2	벽제동	0+115.1	좌	9635S-331-132-R1	한국전력	
3	벽제동	0+165.8	좌	9635S-421-130-R2	한국전력	
4	벽제동	0+186.5	좌	9635S-521-132-R3	한국전력	
5	벽제동	0+187.0	우	9635S-422	한국전력	
6	벽제동	0+261.8	좌	9635S-611-132-R5	한국전력	
7	벽제동	0+292.0	좌	9635S-713-132-R6	한국전력	
8	벽제동	0+349.0	우	9635S-733-132-R7	한국전력	
9	벽제동	0+382.7	우	9635S-734-132-R8	한국전력	
10	벽제동	0+385.1	우	9635S-731-132-R8-21	한국전력	
11	벽제동	0+446.6	좌	9635S-841-132-R9	한국전력	

- 체신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위치(STA)	방향	전주번호	관리청	비고
1	벽제동	0+29.1	우		KT	
2	벽제동	0+117.5	좌		KT	
3	벽제동	0+167.2	좌		KT	
4	벽제동	0+203.0	좌		KT	
5	벽제동	0+266.8	좌		KT	
6	벽제동	0+317.9	좌		KT	
7	벽제동	0+344.8	우		KT	
8	벽제동	0+423.3	우	상곡간26-2*2*6	KT	
9	벽제동	0+443.0	좌	상곡간26-2*2*7	KT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192-4 등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0.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192-4 (식사동)	2023-10-13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9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572 (성사동)	2023-10-13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4-52 (백석동)	2023-10-13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명동 96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일로1267번길 111 (지명동)	2023-10-13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1267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18, 118-1, 122, 1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60-58 (문봉동)	2023-10-13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99-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93번길 13-78 (성석동)	2023-10-13	20100126	성현로 시점에서 93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595번길 43-43 (대자동)	2023-10-13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1595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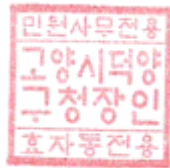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63, 1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7번길 39	2023-10-06	토지이동(합병)에 따른 지번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192-6	2023-10-11	건물 신축	2011-07-29	식사동	

공 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조한 공인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
신조	고양시덕양구 호자동장인 민원사무전용(중)	
신조	고양시덕양구 호자동장인 민원사무전용(형)	
신조	민원사무전용 고양시덕양구청장인 호자동전용(중)	
신조	민원사무전용 고양시덕양구청장인 호자동전용(형)	

2.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추가 구입에 따른 훈민정음체 공인 등록

3. 최초사용 연월일 : 2023. 10. 16.

4. 공고자 : 고양시 덕양구청장

2023. 10. 13.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고양시 공고 제2023-2464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고 양 시 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5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 외 모든 차량	구간	백마로 (장항동 525-11번지~ 장항동 541-11번지 일원)
기간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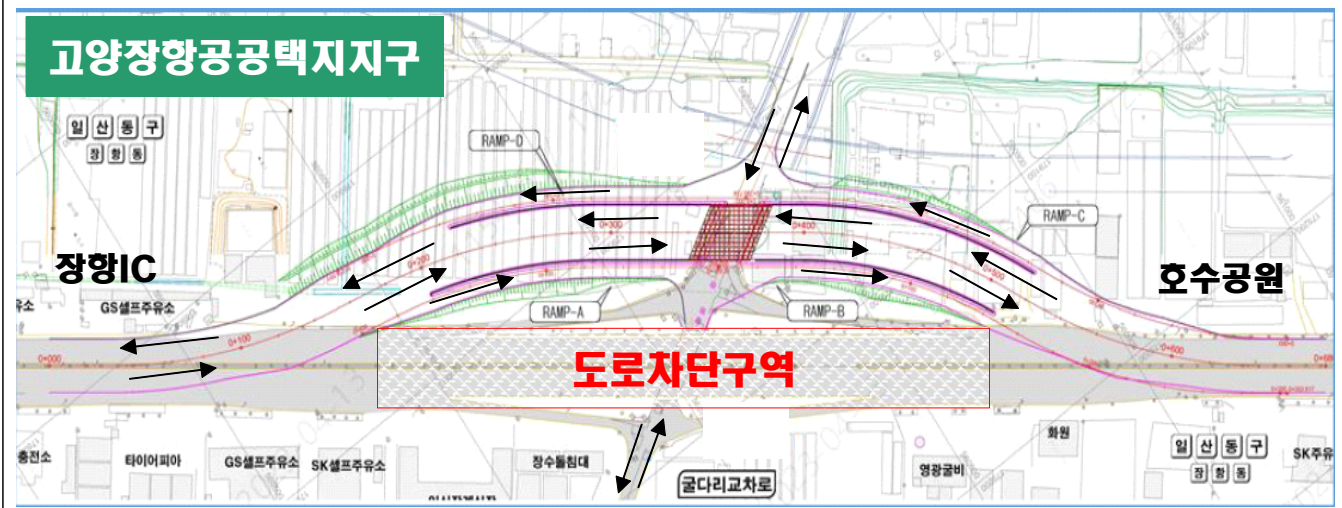
「고양장항공공택지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장항
굴다리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을 위한 굴다리 철거 및 확장공사에 따른 전면교통통제

그 밖의 사항

- 통제방법 : 전면차단
- 통행방법 : 우회도로 통행
- 연 락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01-4533), (주)삼양건설(☎031-915-1116)

첨부서류: 우회동선도

우회통선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3.

고 양 시 장

1.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

가. 목표연도 : 2030년

나. 계획의 범위 : 고양시 관리지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다. 계획의 내용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 10. 13. ~ 2023. 10. 27.)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031-8075-3072)

4. 관련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